

의 정 정 보

2010 - 5호 5. 10.

1.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2
2.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11
3.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23
4.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43
<참고1> : 자주묻는 선거관련 법규 안내		60
<참고2> : 단체 등의 선거쟁점관련 활동방법 안내		77
<참고3> : 행복한 책 읽기		89

▣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직접 전화통화 중 녹음된 홍보내용 전송	——	2
2.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한 선거운동	——	3
3. 문자메세지 발송 횟수 산정	——	4
4. 마스코트를 이용한 선거운동	——	5
5.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에 유세로봇 설치 등	——	6
6.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기부의 알선 등	——	7
7. 선임권자의 회계책임자 겸임 가능여부	——	9
8. 예비후보자의 홈페이지에서 정치자금 공개 차입	——	9
9. 선거사무원 등의 회계책임자 겸임 가능여부	——	10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직접 전화통화 중 녹음된 홍보내용 전송

《질 의》

예비후보자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6호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82조의5 제3항에서는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예비후보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수신동의를 얻은 다음에 본인 또는 제3자(성우 또는 다른 정치인)의 음성으로 녹음된 홍보내용을 들려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귀 위원회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2.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또는 제3자의 녹음된 음성으로 수신동의를 물은 후 수신동의를 한 유권자에 한하여 예비후보자가 직접 통화를 하면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지요? (2010. 4. 14. 조현빈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 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제3자의 녹음된 음성을 이용하여 단순히 선거인의 통화의사를 물은 후 직접 통화를 하거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인과 직접 통화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음성으로 녹음된 홍보내용

을 들려주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무방할 것임. (2010. 4.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②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한 선거운동

《질 의》

○○○텔레콤이라는 통신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전화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텔레콤에 따르면 전화기 자체에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1회에 10개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현행 「공직선거법」에 적용되는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 제한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전화기를 이번 지방선거에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기의 특징

- 유선전화기로 송수신의 전화기 고유의 기능
- 컴퓨터와 별개로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통상적인 하드웨어형 인터넷전화기
- 전화번호 저장 기능
 - 전화기 자체 입력시 100개
 - 컴퓨터에 저장된 전화번호 10,000개까지 전화기로 옮길 수 있음.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화기에 내장되어 있고, 전화기와 컴퓨터를 유선으로 연결하여 컴퓨터에 있는 전화번호부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단순히 전화번호를 이동시키는 기능으로 컴퓨터와 전화기 모두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어도 옮길 수 있음)
- 인터넷 전화기 제조후에는 프로그램을 인위적으로 변경이나 추가할 수 없으며 이동식 저장장치(USB등)를 전혀 연결시킬 수 없음.
- 전화기 자체에서 버튼을 조작하여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보내는 방식

- o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은 1개씩 발송할 수도 있고, 한번에 10개씩 발송할 수도 있는데, 버튼을 반드시 조작하여야만 발송이 되는 수동식임.
(2010. 4. 8. 임현주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같은 내용을 20인 이하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상 전송 횟수가 제한되는 동보통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2010. 4.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③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 산정

《질 의》

문자전송 선거운동방법에서 자동동보전송을 할 경우 보통 후보자의 요청에 의해 문자 전송업체에서 발송하게 됩니다.

질문 1. 만일 후보자가 10만 건의 이름·전화번호 목록과 함께 문자 전송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혹은 웹사이트의 프로그램에서 각각의 수신자 이름을 입력하여 동일한 선거운동정보 발송을 의뢰할 경우 이것을 1회의 동보 전송으로 보는지 여부

질문 2. 상기 의뢰에서 사업자가 주소록을 그룹으로 묶는 기능을 제공하고, 각 그룹별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 문자를 미리 작성하여 1회의 전송명령에 의해 일괄 전송할 경우 1회로 보는지, 그룹 개수만큼 전송 횟수로 보는지 여부 (2010. 4. 7. 박종민 질의)

《답 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수신자의 성명만을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1회로 보아야 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과 같이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 내용별로 횟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2010. 4.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4 마스크트를 이용한 선거운동

《질 의》

「공직선거법」 제68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에 따른 마스크트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입니다.

저희가 만들 예정인 약 2미터 내외 크기의 방수천, 섬유, 고무류 기타 재질로 사람 모양, 지역 상징물, 기타 동물 모형을 만들어 사람이 입고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의 마스크트를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마스크트에 기호, 정당, 성명, 캐치프레이즈 등 게재)

(2010. 3. 26. 강태순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마스크트로 보아 무방할 것임.

(2010. 4.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에 유세로봇 설치 등

《질 의》

본사에서 개발중인 선거용 유세로봇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조속하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운동기간에 연설·대담용 차량에 유세로봇을 설치할 수 있는지
2. 선거운동기간에 유세로봇이 인사를 할 수 있는지
3. 선거운동기간에 유세로봇이 손동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숫자를 암시하는 손가락을 펼치거나 구부릴 수 있는지
4. 선거운동기간에 유세로봇의 얼굴에 후보자의 사진을 넣어도 무방한지
5. 선거운동기간에 유세로봇의 얼굴에 후보자의 캐릭터나 이미지를 넣어도 무방한지
6. 선거운동기간에 유세로봇에 번호가 들어간 티셔츠 및 옷을 입힐 수 있는지 (2010. 3. 17. (주)동방이엔지 대표이사 강충열 질의)

《답 변》

1. 문 1·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04. 3. 19. 온탑기계 대표자 석용훈의 질의에 대한 2004. 3.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회답을 참조하기 바람.

2. 문 4·5·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10. 4.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6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기부의 알선 등

《질 의》

우리 청 내사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확인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사항

가. 2010. 2. 1. 오마이뉴스 신문기사 내용 관련

제하“교총산하단체 교사들 한나라당의원‘1억8천+a’후원관찮나” 보도 기사 내용을 보면 2005년 8월 1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산하의 현직 유치원 교사단체인 전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가 임원 및 대의원 정기대회를 통하여 한나라당 이아무개 의원에게만 총 1억7천, 김아무개 의원에게 1천만원 정도를 모아주기로 결의했다. 대의원대회 회의자료집에 따르면 액수를 10만원씩 통일하고 각 지역별로인원을 구체적으로 할당하였는데 이아무개 의원에게만 경남(200명), 경북(100명), 경기(600명), 강원(300명), 서울(100명), 부산(50명), 대전(60명), 울산(50명), 충남(100명)으로 총 1710명이다 10만원씩으로 계산하면 1억7천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외에도 충북과 서울은 별도로 100명이 또 다른 의원인 김아무개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내자고 회의자료집에 명시돼 있다. 그리고 배당되지 않은 전남, 전북, 광주, 인천은 추후 10월 정기회의를 통하여 누구에게 후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다. 송금방법도 구체적으로 회의자료에 명시돼 있다. “송금시 우리만의 암호(‘공유’로 결정)를 넣어 보내기로 함”이라고 해 보낸 이름만 보면 어떤 단체에서 보냈는지 바로 알 수 있게 했다. 추후 이 단체는 송금 후 의원실에 유치원연합회에서 보낸 것이라고 직접 확인 전화를 하라는 후원방법으로 공지하기도했다. 이후에도 임원회의와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각 지역 대표들에게 보내고, 각 지역 대표들은 또 지역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정치자금 모금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메일에

는 친절하게 한나라당 의원들의 은행 계좌번호와 홈페이지까지 안내되어 있다, 이런 조직적인 모금 안내가 서울, 전북, 울산, 경북, 대전 등 전국적으로 진행됐다

나. 결의내용

위 신문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의 법 조문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위 신문기사내용과 같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산하의 현직 유치원 교사단체인 전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임원 및 대의원 정기대회를 통하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액수와 명수까지 배당하여 정치자금을 모아주자는 결의를 한 후 각 지역 회원들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후원금 모금결의 내용을 공지하고 후원금 모금을 독려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제33조 위반 여부에 대하여 회시바랍니다.

(2010. 4. 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가 아닌 단체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같은 법 제45조에 위반되고,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33조에 위반될 것인바,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에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할 의사가 없는데도 알선행위자와의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마지못해 정치자금을 내게 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부당하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04.4.27. 선고 2004도482 판결). 다만, 귀 사안이 정치

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귀청에서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사법절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010. 4.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7 선임권자의 회계책임자 겸임 가능여부

《질 의》

현재 민주노동당 △△구청장 예비후보자인 홍길동이 △△구에서 소속정당의 정당선거사무소장으로 선임되고 당해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비후보자 홍길동의 회계책임자는 예비후보자가 겸임하지 않고 김갑 돌이 하고 있습니다.

(2010. 3. 30. 김윤실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을 것임.

(2010. 4.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8 예비후보자의 홈페이지에서 정치자금 공개 차입

《질 의》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치자금 차입방법과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공직선거예비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비후보자의 홈페이지에서 당원 및 팬카페 회원으로부터 차입금의 일시.금액 및 대

여자의 성명.주소 기타 명세서를 기재하고 원금보장 및 확정이율을 약속하고 공개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가?

(2010. 3. 30.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자 유시민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에 위반될 것임.

(2010. 4.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9 선거사무원 등의 회계책임자 겸임 가능여부

《질 의》

정치자금법 제34조제3항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기타 선거사무원,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또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이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3. 18. 박완근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임. (2010. 3.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12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2
3.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14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6
5. 장애인연금법	——	18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	19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20
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21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34호, 2010.4.21. 공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제9974호, 2010. 1. 25. 공포·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상의 행위이더라도 선거일전 일정기간 동안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한하였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 집행 명의에 관해서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도록 통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2130호, 2010.4.20. 공포】

1. 개정이유

보증·대출이 필요 없는 기업도 보증·대출 가능금액의 결정을 받으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공장설립과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의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9984호, 2010. 1. 27. 공포, 4. 2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요건을 합리화하며,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벤처투자조합 해산요건의 개선(영 제3조의10제1항제2호)

- 1)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을 위해서는 조합원 총수 및 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1지분에 1의결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고 해산기준이 너무 엄격한 문제점이 있음.
- 2)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요건을 발행된 총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조합원이 해산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총지분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변경함
- 3) 일반적인 조합운영 과정과 동일하게 해산 결정 시에도 출자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총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해산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학생의 실험실공장 설치 시 동의절차 규정(영 제11조의10제2항 신설)

- 1)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생의 공장 관리 미흡으로 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함.
- 2) 학생의 경우 실험실공장 설치의 승인을 신청할 때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연구실 등의 관리책임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함.
- 3) 학생의 실험실공장 운영 능력을 평가한 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험실공장의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의 일원화(영 제18조의4)

- 1)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이 벤처기업 유형에 따라 1년 또는 2년으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유효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매년 재확인이 필요하여 벤처기업에 불편을 끼치는 문제점이 있음.
- 2) 벤처기업의 유형에 관계없이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함.
- 3)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이 일원화됨에 따라 매년 재확인을 받는 데에 따른 벤처기업의 불편이 해소되고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③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267호, 2010.4.15. 공포】

1.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국토의 초광역권 계획이 수립되어 기존 동·서·남해안권 발전축과 더불어 내륙 발전축을 균형 있게 개발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내륙권의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륙권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제화가 미비하므로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개발사업의 집행절차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륙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개발사업 추진에 지연을 초래하는 복잡한 위원회 심의절차를 개선하

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사항을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해안 중심의 대외개방형 미래성장축에 내륙권의 실행력 확보 방안을 추가하기 위하여 이 법의 공간적 범위에 내륙권을 포함시켜 제명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개정함(법 제명).
- 나. 해안권에 내륙권이 추가됨에 따라 내륙권에 대한 용의를 정의함(법 제2조제1호의2 신설).
- 다. 내륙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입안 절차 및 방법,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는 동·서·남해안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
- 라.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시 「건축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제1항).
- 마.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수립·승인·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도록 함(법 제12조제4항).
- 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인·허가의제 대상을 확대함(법 제15조제1항).
- 사. 종합계획,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명칭을 현행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에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함(법 제21조).
- 아. 내륙권의 문화관광산업진흥을 위하여 기존 동·서·남해안권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내륙권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대여·보조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및 제31조제4항).

자. 개발구역 안의 사업시행자 및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법 제31조의2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66호, 2010.4.15. 공포】

1. 제정이유

도시의 기능과 공간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역세권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나 현재 대부분의 역세권개발은 주변지역과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철도역과 주변지역 간의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역세권의 특성이 반영된 지원이 부족하여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복합단지 개발의 추진이 어렵고 철도역의 확장·신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개발이익이 철도 및 지역경제로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역세권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역세권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역세권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절차를 정함으로써 철도시설과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역 중심의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개발구역의 지정제안 및 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정함(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나.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7조).
- 다.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 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및 행위 제한 등을 정함(법 제9조부터 11조까지).
- 마.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준공처리 등 시행절차를 정함(법 제12조부터 제24조까지).
- 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를 역세권개발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
- 사. 역세권개발사업의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에서 일부 비용에 대해 국가가 보조 또는 용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법 제26조).
- 아. 역세권개발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역세권개발 채권의 발행·매입 근거 및 절차를 정함(법 제28조 및 제29조).
- 자. 역세권개발사업 촉진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근거를 정함(법 제30조).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⑤ 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0255호, 2010.4.12. 공포】

1. 제정이유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생활수준이 열악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으므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무기여(無寄與)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 나.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함(법 제4조).
- 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부가급여로 구분함(법 제5조).
- 라.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함(법 제6조).
- 마.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7조).

- 바. 수급권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 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된 자에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함(법 제13조).
- 아.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하도록 함(법 제21조).
- 자. 기초급여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함(법 부칙 제4조).

3.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107호, 2010.4.7. 공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에 재정상·조직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239호, 2010.4.15. 공포】

1. 개정이유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보상금의 규모가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증대하면서 이러한 보상자금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고 토지소유자의 탄력적인 보상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금보상 외에 대토보상 및 채권보상을 활성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환매권 행사를 유보하는 공익사업에 택지개발사업을 추가하여 공익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대집행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철거의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토지로 보상할 수 있는 주택용지 상한면적을 330제곱미터에서 990제곱미터로 확대함(법 제63조제2항).

- 나.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상속을 제외하고는 전매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법 제63조제3항).
- 다.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소유자는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63조제4항 신설).
- 라. 채권의 장기보유를 위하여 5년 만기채권 발행 시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하도록 함(법 제63조제9항).
- 마. 대집행 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법 제89조제3항 신설).
- 바.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가 다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는 경우 환매권 행사를 유보하도록 함(법 제91조제6항).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⑧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233호, 2010.4.5. 공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이 장애인기업과 일반기업을 동등하게 지원하는 개념정도로 이루어져 있어 장애인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의 기회가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여, 장애인 창업 활성화 및 열악한 경영환경 속의 2만여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 촉진하고,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안 ——— 24
2.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안 ——— 31
3.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 35



최근 타시·도 제·개정 조례

1]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0. 4.

제 출 자 : 광주광역시장

1. 제안이유

- 남구 임암동 389번지 일원에 위치한 김치타운이 2010.6월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김치타운의 설치 및 운영과 공공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의 사용 규정(안 제5조~제8조)
 - 김치타운을 직영 또는 민간에게 위탁
 - 시설은 휴무일을 제외하고 09:00~18:00 개방
 - 김치가공공장, 식당 등 사용·수익 허가
- 사용료 및 관람료 징수(안 제9조~제10조)
 - 김치박물관, 세미나실, 회의실 등 유료(사용료 받음)
 - ※ 김치광장 등 옥외시설은 무료사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주최를 할 경우 사용료 면제
- 위탁운영 근거 마련(안 제11조)
- 운영비 보조(안 제15조)
 -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별첨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 (1) 입법예고(2010. 2. 1 ~ 2.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의결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의 위상제고 및 김치 세계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김치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김치타운”이란 김치박물관, 김치가공공장, 김치체험장, 세미나실, 회의실, 식당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운영자”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김치타운 내 시설을 사용·수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위치) 김치타운은 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 389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김치타운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관리 및 운영
2. 김치 아카데미 운영
3. 김치 및 발효식품에 대한 교육·체험지원
4. 명가김치 생산 및 마케팅 지원
5. 김치문화축제 개최 지원
6. 그 밖에 김치타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수행

제5조(운영) ① 시장은 김치타운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김치타운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① 김치타운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연휴
2. 매주 월요일
3. 법정 공휴일의 다음날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설 개방일 및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수익허가) ① 김치타운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대상 시설물은 김치가공공장, 식당, 세미나실, 회의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③ 시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변경,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승인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시와 세계김치연구소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사용료 납부 및 감면) ①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식당, 김치가공공장 :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재산 감정평가 가격의 연 1천분의 50

2. 회의실, 세미나실 : 별표 사용료

② 시장은 시의 김치산업 육성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및 업체가 식당과 김치가공공장을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1. 시 관내에서 김치가공공장을 운영 중인 김치생산업체

2. 광주김치문화축제 수상자중 우리시 거주자
-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김치타운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김치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방법과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관람료) ① 김치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의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1. 65세 이상 어르신과 유치원생 이하
 2. 국가 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등록 장애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따른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수탁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종사자의 고용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선정심의위원회) ① 김치타운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1.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식품산업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식품산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그 밖의 법률전문가 등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수탁자 선정심사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김치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위탁시설의 사용·수익) ① 수탁자는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2. 시설의 기능 및 목적에 위배되게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운영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비 보조)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노후 및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한 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는 자원봉사자 활용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자 및 사용·수익 허가자 결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광주광역시의회, <http://www.council.gwangju.kr/>]

②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안

의안 번호	629
----------	-----

제출연월일 : 2010. 3. 12.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여 피난시설 등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신고대상 행위와 신고의 방법을 정함(안 제2조).
- 나. 신고의 접수와 처리, 포상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포상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정 / 50,000천원
- 다. 합 의 : 예산담당관 합의
-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2) 입법예고 : 2010. 1. 30. ~ 2. 18.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①대전광역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위반행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위반행위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접수 및 처리) ①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신고 접수일부터 24시간 이내에 현장 확인을 통하여 위법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관할을 달리하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포상) ①소방서장은 제2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포상금을 목적으로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3.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4.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②신고포상금은 5만원으로 한다.

③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나의 위반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처리결과 통지) 소방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 여부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은 제3조제1항에 따른 확인조서를 작성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대전광역시의회, <http://council.metro.daejeon.kr>]

③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79
----------	-----

발의연월일 : 2010. 3. 12

발 의 자 : 박찬수, 김성호, 이영윤, 정창욱
송대수, 강종문, 나종석, 박해숙
국영애, 이호균 의원(10인)

1. 제안이유

- 저출산 현상은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우리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의 추진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책무 등을 규정 (조례안 제1~3조)
- 출산지원 등 (조례안 제4조)
 - 공공기관 및 단체·기업 등의 모유수유실 설치지원 근거 규정
 - 기업이 저출산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동참기업에는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
- 신생아양육비의 지원 규정 (조례안 제5조)
 - 1인당 30만원 지원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
- 세자녀 이상 가정 “다자녀행복카드” 발급 (조례안 제6조)
- 지원대상 등 (조례안 제8조)
 -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서 지원받는 보호자 및 대상자는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도 관내에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자로 제한

○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안 제9조)**

- 출산지원정책, 인구정책 관련사업, 모자보건 증진사업, 기타 도지사
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보조금 또는 행정적 지원 규정

○ **환수조치 (조례안 제11조)**

-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생아양육비를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
- 지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타 시·도로 전출시

○ **출산장려를 위한 포상 규정 (조례안 제12조)**

3. 관계법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영유아보호법」
- 「전라남도 보육지원 조례」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을 저하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신생아양육비”란 전라남도내(이하 “도내”라 한다)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다자녀행복카드”란 막내 자녀가 만 13세 미만인 세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5. “보호자”란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를 말한다. 다만,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신생아양육비 등을 지원 받을 보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도의 책무)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국가의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출산지원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단체, 기업 등의 모유수유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며,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업이 저출산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공공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신생아양육비의 지원) 도지사는 출산가정에 대하여 신생아 1인당 신생아양육비 30만원을 지원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한다.

제6조(다자녀행복카드의 발급) ① 도지사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다자녀행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① 보건의료원·보건소장은 신생아양육비를 지원한 산모와 영유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모자보건증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모자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임산부·영유아 등의 건강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모유수유율 등 기초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지역 모자보건사업 계획 등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등)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보호자 및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도 관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②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의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출산지원정책 및 인구정책 관련 사업
 2. 모자보건 증진사업
 3.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
-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지원금의 중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1조(환수조치) 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생아양육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② 신생아양육비는 지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타 시·도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판단 하에 환수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단체·사업체·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출산장려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남도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신생아양육비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신생아양육비의 지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한 경우부터 지원한다.

[자료출처 : 전라남도의회, <http://www.jnassembly.go.kr>]

▣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1. 국민들의 정책아이디어로 환경을 살려나간다	——	41
2. 국보급 전시 기록물을 사진으로 미리 만나 보세요	——	42
3. 별정직·계약직공무원도 질병휴직 된다	——	44
4. 퇴직공무원, 재래시장 상담 도우미로 활약한다	——	48
5. 출산 앞둔 여성공무원, 맘 편하게 출산휴가 간다	——	49
6. 경형 전기자동차 구입시 취·등록세 면제 혜택 부여	——	52
7. 163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완료 및 우수 발전계획 선정	——	53
8. 국가고시 시험출제 시스템 전면 개선한다	——	56
9. 청소년 인터넷중독률 성인의 두배로 여전히 높아	——	57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1] 국민들의 정책아이디어로 환경을 살려나간다

- 생활공감정책 『1회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 대체』 확산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생활공감정책 주요과제로 추진 중인 『1회용 비닐봉투, 재사용종량제 봉투 대체』 정책을 송파구청 내 대형 할인마트를 시작으로(4월28일) 서울시에도 확산해 추진한다.
- 『1회용 비닐봉투, 재사용종량제 봉투 대체』는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대형유통매장에서 쇼핑봉투로 1회용 비닐봉투를 구입하는 대신,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쇼핑봉투로 활용도 하고, 가정에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로 사용해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정책추진상황 현장점검, 환경부 및 서울시 등 유관기관 협조회의를 통해 정책실행을 추진해 온 결과,
 - 서울시에서 구청별 독립채산제에 따른 타구청의 재사용종량제 봉투 처리 문제를 해소하고, 송파구청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 8개 자치구, 9월 중 전 자치구에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송파구청에서는 재활용 종량제 봉투를 쇼핑용으로 사용하기 좋도록 디자인을 개선해 관내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공급하였으며, 판매가격은 기존 종량제봉투와 동일하다. 그리고 마트에서 구입한 재사용종량제 봉투는 자치구 구분없이 수거·처리가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환경부 등과 협의해,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인센티브 등을 검토하는 한편, 국민들의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 반영한 생활공감정책으로 녹색생활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재사용종량제봉투 관련 사진



《송파구청 제작 재사용종량제 봉투》

《쇼핑봉투로 활용한 재사용종량제봉투》

2 국보급 전시 기록물을 사진으로 미리 만나 보세요 - 국제기록문화전시회(6.1~6.6) 주요 기록물 사진전 개최 -

- 국가기록원(원장 박상덕)은 4월 26일(월)부터 5월 31일(월)까지 국제 기록문화전시회 기념 주요 기록물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진전은 세계기록유산 및 세계 각국 주요 기록물의 사진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기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시회의 참관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 우리나라의 찬란한 기록문화 전통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한 '2010 국제기록문화전시회' 사업의 일환이다.
- 사진전에는 팔만대장경, 구텐베르크 성경, 조선왕조실록, 백설공주, 마그나카르타 등 전시회에 전시될 주요 기록물의 사진 또는 이미지 20여 점이 전시되며, 전시회에 앞서 세계적인 진귀한 기록물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1차로 4월 26일(월)부터 5월 2일(일)까지 청계천 광고 갤러리에서 24시간 전시하고, 2차로 5월 5일(수)부터 9일(일)까지 종로3가역 환승구간에서 12시부터 20시까지 전시하며, 3차로 5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서울광장에서 12시부터 20시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 또한, 5월 17일(월)부터 5월 31(월)까지는 야외에서 전시한 패넌을 4~5개씩 소량으로 나눠 정부중앙/과천/대전청사 등 주요 기관의 로비 등에 소규모로 실내 사진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 한편, '2010 국제기록문화전시회'는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코엑스 1층 A홀에서 개최되며, 팔만대장경, 구텐베르크 성경 등 국내·외 1천여 점의 기록물, 관련 산업전과 회의 등 종합적 기록문화 전시회로, 세계 최초,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 천 년 역사의 팔만대장경판 원본과 종교 개혁을 앞당긴 구텐베르크 성경 원본을 비롯하여 조선왕조실록, 백설공주, 승정원일기, 마그나카르타, 드폴 대국민 호소문, 베토벤 교향곡 9번 등 대표적인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 기록물들이 전시되며
- 미국의 독립선언서, 몽골제국 제3대 구육칸이 교황 이노센트 4세에게 보낸 서신, 현존 최고 종이 공문서인 중국의 당대개원연간

당안, 베트남 응우옌 왕조의 역사인 대남실록 등 세계 각국의 주요 기록물은 물론, 난중일기 원본, 잡지 '소년' 창간호 등 희귀한 국내 기록물들이 선별 전시된다.

- 아울러, 기록관리산업전에는 국내·외 기록관리 관련 약 100개 기업들이 참가하며, 녹색·친환경 보존장비, 최첨단 전자기록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관람은 물론 최신 기술 동향 및 향후 기록관리산업의 발전방향을 탐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 전시회와 연계하여 기록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국제기록관리협회(ICA) 및 동아시아기록관리협회(EASTICA) 집행이사회를 동시 개최하며, 국내·외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가하는 전시회 기념 세미나 및 EASTICA 세미나도 개최한다.
- 이번 전시회는 공익적·교육적인 차원에서 입장료를 따로 받지 않으며, 전시회에 대한 세부 내용이나 사전 단체관람 신청, 전시회 기념 각종 공모전 등에 관한 내용은 전시회 공식 홈페이지(<http://www.iace.or.kr>)를 참고하면 된다.

③ 별정직·계약직공무원도 질병휴직 된다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4.22) —

-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별정직·계약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질병휴직 허용 및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시간제근무 활성화를 위해 시간제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인정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4월 22일부터(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우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보건진료원 등과 같은 별정직공무원과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계약직 공무원이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퇴직할 수밖에 없었으나,
 - 앞으로는 1년(공무상 질병은 3년) 범위 내에서 질병휴직이 허용됨으로써 질병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가임기 여성공무원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남은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개선(1년→6월)함으로써,
 -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공무원의 출산 및 육아 걱정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첫째,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는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므로 승진지연과 보수 삭감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시간제근무를 기피함에 따라 시간제근무의 활성화를 위해
 - 시간제 근무기간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경력 및 승진소요 산정시 100%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 둘째, 휴직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일부 경력은 우대하는 특별한 제도로써,
 - 휴직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복직명령 및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4.22~5.12)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초 시행할 예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6월 중 국회 제출)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 “공직사회에서 상대적 약자들에 속하는 특수직종 및 소수직렬 공무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줌으로써, 일선 공무원들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에 대해 균형적 인사제도 구현을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
-----	---------------

목 표	주 요 내 용
1. 육아휴직 결원보충 개선	○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사용시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인정
2. 특수경력직 공무원 휴직 범위 확대	○ 별정직·계약직공무원 질병휴직 근거 마련 ○ 계약직공무원 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 ※ (현행) 계약기간 만료 1년 전 → (개정)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
3. 고용직공무원 제도 폐지	○ '08년 이후 공직내에 존재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제도 폐지 ※ 국가공무원은 '05년 이후 고용직 없음
4.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기피·회 피 근거 마련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소청당사자의 기피 및 위원의 회피 근거 마련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로 의결에 참여하는 위원의 수가 3인 미만인 경우 임시위원 임명 의 근거 마련

목 표	주 요 내 용
5. 복수국적자의 보 안·기밀분야 임 용 제한	○ 국적법 개정 추진으로 ‘복수국적자’를 ‘국민’과 동일하게 취급하게 됨에 따라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분야 에서 이들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적법개정안('09.12.29 국회제출) 법사위 계류 중
6. 강등처분시 별도정원 인정	○ 강등처분시 하위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 별도정원 인정 ○ 강등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판결시 원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 별도정원 인정

참고2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
-----	------------------

목 표	주 요 내 용
1. 시간제 근무 활성화	○ 시간제근무기간 승진소요연수 인정범위 확대 - 승진소요연수 산정시 1년 범위 에서 시간제근무기간을 100% 인정 ※ 현재는 시간제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2. 공무상 질병휴직 제도개선	○ 공무상 질병휴직자 특별승진 허용 - 공무상 질병휴직중인 자에 대한 휴직 중 명예퇴직(특별승진) 과 추서 허용
3. 승진임용 제도 개선	○ 승진임용제한사유에 “ 징계처분요구 ” 추가 - 인사감사 결과 징계처분요구 통보된 자에 대해 승진제한함으로써, 인사감사의 신뢰성 확보
4. 휴직자 영리행위 금지 등 엄정한 휴직제도 운영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및 휴직기간 중 영리활동 등 공무원 의무위반사례 발생 - 휴직의 목적외 사용이나 비위로 징계처분받은 경우, 그 휴직기간은 경력 등에 불산입
5. 파견제도의 탄력적 운영	○ 파견기간 운영시 최대 파견 허용기간 범위내에서 연장기간 및 횟수 자율적 운영
6. 기 타	○ 교관요원 명칭(교관→교수요원) ○ 별도정원 간주 신규임용 확대(8급 포함)

4] 퇴직공무원, 재래시장 상담 도우미로 활약한다

- 4.15. 서울 공릉 도깨비시장에 세무·법무 상담 코너 개설 -

-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공단, 국세동우회(국세청 퇴직공무원동호회) 등 퇴직공무원 단체, 서울시 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 재래시장 상인의 세무·법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퇴직공무원 재래시장 상담코너**』를 개설·운영하기로 하고, **4월 15일(목)** 서울 공릉 도깨비시장 내에 상담코너를 시범 개설한다.
 - 전직 **세무공무원**(현 세무사)·**법원공무원**(현 법무사) 출신 퇴직자(2명)가 상담도우미로 나서 시장 영세상인들의 세무·법무분야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사진)
- 이번 상담코너 개설은 **퇴직공무원들의 숙련된 노하우**를 사회에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으며
 - 생업에 바쁜 영세 상인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행정안전부는 4월 중으로 서울풍물시장, 돈암 제일시장 등 **2~3개 재래시장에서 추가로 상담코너를 시범운영**하고 그 운영결과를 토대로 전국 재래시장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퇴직공무원의 사회참여·봉사활동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공무원연금공단과 공동으로 **저소득층자녀 공부방 지원**(퇴직교사 참여, 운영비지원)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주택안전진단수리서비스** 등 봉사활동과
 - 연금업무서비스 도우미, 정보화교육·문화강좌 강사, 임대주택관리 보조 등 연금공단 업무와 연계한 사회참여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퇴직공무원 사회참여·자원봉사 활동지원 사업 내용>

추진사업(4월~12월)	사업내용
•저소득층자녀 공부방 지원	- 8개 공부방 지원 - 한자, 컴퓨터 활용, 예절교육 등 지도
•사회소외계층 가정 등 안전진단·수리서비스	- 매월 총 52명 참여(소방시설점검, 전기공사 자격증 소지자 참여) - 수리비용 지원(시설별 약 10만원)
•전문분야 상담코너 운영	- 법무, 세무 등 전문분야 연 273명 활용
•문화강좌, 정보화교육 강사 활용	- 문화강좌 강사 연 8명 ※ 건강관리, 여가활용 등 - 정보화교육 강사 연 336명 ※ 컴퓨터활용, 인터넷, 워드프로세서 등
•연금업무 서비스 도우미 활용 등	- 매월 총 32명 참여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업무지원(민원접수·처리, 업무보조 등)
•공무원임대주택 시설관리업무 보조	- 총 45명(자격증소지자) 상시채용 - 안전점검, 하자 보수, 임퇴거시 시설물 인수인계 등

-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퇴직공무원이 사회참여 등을 통해 활기차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지원 포털 서비스시스템”도 올해 상반기 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⑤ 출산 앞둔 여성공무원, 맘 편하게 출산휴가 간다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4.15) -

- ☐ 행정안전부는 출산장려 차원에서 출산을 앞둔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할 때, 출산휴가시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15(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재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없어, 여성 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가면서도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부담을 줄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 출산휴가 기간에는 휴가자의 업무를 동료 1인이 대행하거나, 다수 동료들이 분담

- 하지만, 앞으로는 출산휴가 때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 맘 편히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계약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 현재는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남은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 특히,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공무원의 출산 및 육아 걱정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05년부터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제도를 60년만에 폐지한다.

- 1950년 고용원으로 시작한 고용직공무원제도는 그간 정부 인력 수요의 변화에 따라 일부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되었고, 사환으로 불리던 경노무고용직도 '05년부터 완전히 사라졌다.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계시 결원보충 개선 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계 활용시 여성공무원의 심리적 부담 해소
 -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인정

- 계약직공무원 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
 - (현행) 계약기간 만료 1년 전 → (개정)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

2) 고용직공무원 제도 폐지

- 정부인력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05년 이후 공직 내에 존재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제도 폐지

3) 복수국적자의 임용분야 제한

- 국적법 개정 추진으로 '복수국적자'가 상시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분야에서 필요한 경우 이들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국적법개정안('09.12.29 국회제출) 법사위 계류 중

4) 맞춤형 인사제도 지원

- 승진적체로 인한 사기저하 해소 차원에서 필요시 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행) 결원의 2~5배수 → (개정) 필요시 배수범위 확대 가능
- 특수업무분야, 연구·특수기술직렬 이외에도 특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현행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행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현행) 특수업무분야, 연구·특수기술직렬 → (개정) '특정기관' 추가
※ 계급제 개편 시범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5) 기타 미비점 보완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기피·회피의 법률적 근거 마련
 -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제척과 함께,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기피·회피를 법률에 규정
- 강등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판결시 원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 별도정원 인정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조윤명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 “앞으로 출산휴가를 가는 여성공무원들이 동료들에게 가졌던 불편한 마음이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 이와 같이 일선공무원들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4.15~5.6)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6] 경형 전기자동차 구입시 취·등록세 면제 혜택 부여

- 취·등록세 감면액 105만원 지원 효과 -

- 행정안전부는 4월 14일부터 시중에 시판되고 도로에서 운행될 예정인 경형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구입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취·등록세를 면제하여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친환경녹색성장 및 에너지절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 기존에는 배기량이 1000cc미만인면서 경형자동차 규모*인 자동차(마티즈, 아토스, 비스토 등)를 구입할 경우에만 경형자동차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 규모

- 자동차의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 앞으로는 전기를 사용연료로 하여 배기량이 없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여도 자동차의 규모가 경형자동차 규모에 해당된다면 경형자동차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따라서 4월 14일 본격 상용 시판 예정인 전기자동차(차량가격 약 1500만원)를 구매할 경우

- 자동차 구입시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 30만원, 등록세 75만원 등 105만원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취득세 : 차량가액의 2%, 등록세 : 차량가액의 5%

□ 아울러 경형전기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도 현행 경형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와 비슷한 수준의 세부담인 연세액 1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경형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4월 중에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경형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앞으로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되어 CO₂ 배출량 감소 및 친환경 녹색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7 163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완료 및 우수 발전계획 선정

□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와 행정안전부는 공동으로 163개 기초생활권* 모든 시·군이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5년 단위) 수립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전국 어디에 살든지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공간으로 **기초지자체 163개 시·군**(자치구 제외)

□ 특히,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은 지난 해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사항으로,

○ 희망하는 시·군에서만 수립하면 되는 **임의적인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권 163개 모든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 깊다**고 양 기관은 밝혔다.

□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이번에 수립된 발전계획들이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 각 시·군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발전계획을 상호 **벤치마킹**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수 발전계획 20건을 선정·발표**하였다.

□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우수 발전계획 선정을 위해 163개 시·군별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 자체 수립 여부**, **비전·목표·추진전략의 적절성** 및 **지역특성 반영정도**, **지역간의 연계·협력성**, **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였다.

○ 평가 결과, 충북 증평군, 전북 고창군, 전남 완도군, 경북 영주시-봉화군이 각각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 충북 제천시, 충남 예산군, 전북 진안군, 전남 담양군, 경북 청송군-영양군, 경남 함양군이 **최우수** 발전계획으로 선정되었으며,

○ 경기 군포시, 강원 고성군, 충북 청주시, 충남 서천군, 전북 장수군, 전남 장흥군, 경남 하동군 등 10개 시·군이 **우수** 발전계획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특히,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영주시-봉화군**, **청송군-영양군**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양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립하였다고 밝히면서,

- 이들 지역 사례는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전략의 핵심적 내용인 **연계·협력사업**을 생활권이 유사한 **인접 지자체와 공동계획**으로 수립했다는 점에서 **좋은 모범사례**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이러한 **지자체간의 공동계획 수립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양 기관은 **공동으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매뉴얼 보급**은 물론 **시장·군수 초청 설명회**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으며,
 - 시·군에서 수립한 발전계획에 대해 **각 시·도의 1차 자체평가**와 **지역개발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심의회**의 최종 평가를 거쳐 **우수 발전계획**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양 기관에서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발전계획에 대해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전국 시장·군수 지역발전정책 설명회**』를 통해 **정부 포상(기관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 아울러, 조만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함께 각 시·군에서 제출한 **연계·협력사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업**들을 선정하고,
 - 우수 사업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예) 2011년도 정부예산 지원사업에 반영 추진
- 한편, 각 시·군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www.region.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를 통해 **4월 1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 → 정보광장 →
지역발전 자료실 → 일반자료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상단 메뉴 → 행정안전부 안내 →
우측의 실국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역발전정책국 → 기초생활권

[8] 국가고시 시험출제 시스템 전면 개선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0일 치러진 국가직 9급 공채시험에 ‘전교조 발기선언’ 문제 출제 논란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 국가고시 시험문제 출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금까지 교수로 구성된 선정위원이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선정하고, 재검토요원이 문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문제가 출제되어 왔으나,
- 앞으로는 이러한 국가고시 출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 출제위원 선정을 위한 위촉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문제은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향후 문제은행에 대한 주기적 점검체제를 도입하며,
 - 문제선정위원이 선정한 시험문제에 대하여는 감수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선정문제를 감수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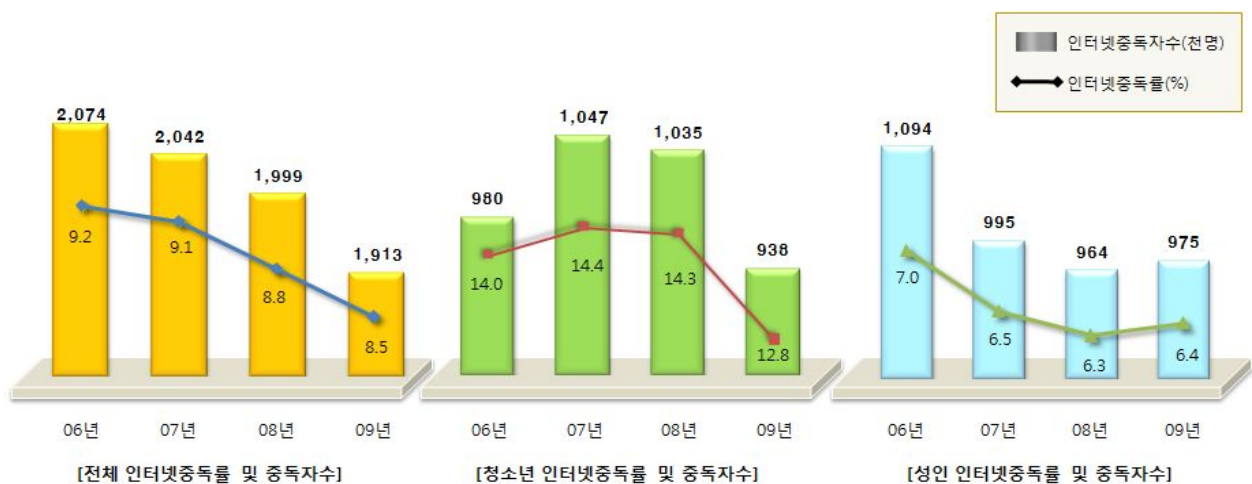
9] 청소년 인터넷중독률 성인의 두배로 여전히 높아

□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우리나라 인터넷중독 현황을 파악하고 인터넷중독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09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도 인터넷 중독률은 8.5%이고 인터넷 중독자 수는 1,913천명으로 전년대비 중독률은 0.3%p 하락, 중독자 수는 86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청소년 인터넷중독률은 12.8%(중독자 수 938천명)로 성인 중독률의 6.4%(중독자 수 975천명) 보다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도별 인터넷중독률 및 인터넷중독자 수》



□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연령별 인터넷중독 현황에서

- 청소년 인터넷중독률은 초·중·고등학생이 각각 10.8%, 12.9%, 14.4% (각각 285천명, 271천명, 285천명)로 전년대비 각각 2.0%p, 1.8%p, 0.3%p 하락되었다.

이는 인터넷중독 위험이 높은 게임 등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한 인터넷이용률은 감소한 반면, 온라인강의 수강 등 교육학습 목적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성인 인터넷중독률은 20대가 8.0%(573천명)로 전년과 동일하며, 30대는 5.0%(402천명)로 전년보다 0.3%p 증가되었다.

이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른 미취업 인구의 증가 등 일하지 않는 사람의 인터넷 중독률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수준별 인터넷중독 현황은 인터넷중독 고위험 사용자가 전체 인터넷 이용자 중 1.5%(338천명)이며, 잠재적위험 사용자는 7.0%(1,575천명)로 전년대비 0.1%p, 0.2%p 하락하였다.

- 고위험 사용자는 청소년의 2.6%(187천명), 성인의 1.0%(151천명)로 전년대비 각각 0.3%p 증가,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초등학교 고위험 사용자만이 유일하게 늘어났다.

이는 인터넷중독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잠재적위험 사용자는 청소년의 10.2%(751천명), 성인의 5.4%(824천명)로 전년대비 각각 1.8%p 하락,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기존 청소년 예방교육 외에 인터넷중독이 심화되고 있는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중독 해소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취학 전 아동 대상 인터넷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치원교사 교원직무연수를 통해 보급하는 등 저연령층 대상 사업을 강화하고,
- 전국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중독 위험군을 사전에 발굴,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난 3월 7개 관계부처가 세운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2012년 인터넷 중독률 5% 이하로 감축’을 목표로 어린 아동부터 청소년, 성인 등 모든 연령에 대해 생애주기적인 포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매년 전국의 만 9세~39세 이하 중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시·도 교육청 및 지역 인터넷중독 상담협력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홈페이지(www.ipac.or.kr)를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http://www.mogaha.go.kr/>]

<참고 1> 자주묻는 선거관련 법규안내

여론조사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되는 여론조사(§108②)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여론조사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명의로 실시 가능

□ 여론조사 신고의무(§108③)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신고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와 정당 및 언론사는 신고의무가 없음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표·보도(§108④,⑤)

- 여론조사실시시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함(§108④).
-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108⑤).

자주묻는질문

- 특정 입후보예정자 1인만의 인지도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유력 입후보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통상의 표본크기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이 경우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할 것임.
- 입후보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일전 60일(4월3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후보자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 입후보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정책개발을 위하여 본인의 육성녹음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녹음으로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여론조사가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같은 법 제108조제2항에도 위반될 것임.

○ 출마여부를 가능하기 위하여 1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여론조사 횟수의 제한이 있는지?

⇒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 여론조사의 횟수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상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나,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자주하거나 통상의 표본크기를 벗어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인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 여론조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임.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중앙일간지 또는 지방신문에 보도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게재할 수 있는지?

⇒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사실대로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에 따라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게재하여야 할 것임.

○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는 기간이 언제인지?

⇒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다만, 그 금지기간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함.

○ 제3자(입후보예정자)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대리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가 신고하여야 함. 다만,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상 책임은 신고의무자에게 있음.

○ 여론조사신고시 우편이나 팩스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 무방할 것임. 다만,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할 것임.

○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선관위에 신고를 한 후 설문내용의 변경이 있어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지?

⇒ 귀문의 경우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함.

○ 시·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 귀문의 경우 신고의무는 없음. 다만,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시·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 여론조사비용이 보전대상 선거비용인지?

⇒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른 여론조사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라 선거일 후 보전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의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함.

□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자주 묻는 질문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실비가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임.

- 선거사무소의 현수막 설치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외벽면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료가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임.

-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홈페이지 및 모바일 블로그 개설비용이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임.

- 후보자의 로고송 제작비용이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 로고송 제작비(저작권료·저작인격권료 포함)는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임.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동시 사용하는 개인차량의 기사인건비와 유류비가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될 것임.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청소인부 1인, 차대접 및 단순워드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 1인을 고용한 경우 이들에게 지급하는 통상의 일용인부임은?

⇒ 역무제공에 따른 통상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인건비는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될 것임.

○ 장애인(예비)후보자가 그의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한 수당·실비는?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될 것임.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임대비용 및 칸막이설치비, 책상·의자 임차비, TV·복사기·정수기 등 사무집기 임차·구입비가 선거비용인지?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될 것임.

○ 선거사무소 외벽에 게시된 현수막이 야간에도 잘 보이게 하기 위하여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 조명설치비가 선거비용인지?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될 것임.

○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비용이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

⇒ 예비후보자공약집이 판매된 경우에는 그 발간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금액을 통하여 충당하게 되어 예비후보자가 부담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예비후보자공약집의 발간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시 납부하는 기탁금이 선거비용인지?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될 것임.

-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가하기 위하여 정당에 납부하는 등록비와 경선운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선거비용인지?

⇒ 당내경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등록비 및 경선운동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될 것임.

-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따라 후보자마다 정해진 차량수 이내에서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차량의 임대료·기사인건비·유류비가 선거비용에 해당되는지?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될 것임.

- 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지 못하는 바 선거비용외 정치자금도 그 상한액의 제한이 있는지?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이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 비용으로써 그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아니함.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자주묻는질문

- 예비후보자의 명함·이메일·예비후보자홍보물·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의 인원수의 제한이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이 없음.
-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위촉장이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는지?
 ⇒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위촉장·임명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위반될 것임.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자원봉사자로서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과 관련없는 단순근로(운전·청소·차대접·물품정리 등)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통·리·반장이 선거운동기간중에 자원봉사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통·리·반의 장은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임.
- 자원봉사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자원봉사자에게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상 보상등 명목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을 것임.
-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전화나 자신의 이동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자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같은 법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다만, 선거운동기간중에 귀문과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집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신고되지 아니한 자원봉사자의 집에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를 증설하고 증설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금지된 유사기관에 해당될 것임.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정책특보인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게재(○○○ 예비후보자 정책특보 △△△)한 명함을 사용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예비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바, 자원봉사자가 지정한 1인이 되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지?

⇒ 귀문의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무방할 것임.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 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연설·대담하게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지?

⇒ 귀문의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 신고의무는 없음.

○ 선거운동기간중 자원봉사자들이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 할 수 있는지?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외의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기간중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수행원이 자원봉사자인 경우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 귀문의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른 수이내의 범위에서 1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후보자·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제2항)

-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 15인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 10인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 5인
- ※ 가족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언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

□ 신문광고와 방송광고(☞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만 해당됨)

	신문광고(\$69)	방송광고(\$70)
매 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나목에 따른 일간신문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
기 간	5. 20 ~ 5. 31	5. 20 ~ 6. 1
횟 수	총 5회 이내 (인구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마다 1회를 더함)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
규격·시간	규격·색도·위치 제한없음	1회 1분 이내

□ 방송연설(\$71)

선 거	연설자	연설시간	매체별 연설횟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후보자	10분 이내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이내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	10분 이내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2회이내
교육의원 선거	후보자	10분 이내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이내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후보자중에서 선임된 대표1인	10분 이내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82)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잡지),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언론사는
- 선거운동기간중(5.20 ~ 6.1)에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대담·토론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음.
-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4.3)부터 개최가능

자주묻는질문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신문광고를 당해 선거구를 배부권역으로 하는 지역신문에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앙일간지에도 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 제69조에 따른 신문광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된다면 지역신문 뿐만 아니라 중앙지에 하는 것도 무방할 것임.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무가지 신문에 신문광고를 할 수 있는지?

⇒ 귀문의 신문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이라면 5. 20부터 5. 31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총 5회이내에서 광고할 수 있을 것임.

○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속해 있는 향우회, 동문회, 각종 봉사단체 등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를 위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94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자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송광고를 할 수 있는지?

⇒ 2010.6.2.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방송광고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정당이 귀문의 내용으로 방송광고를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94조, 제98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지역방송시설인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으로 방송연설을 할 수 없는지?

⇒ 「공직선거법」 제71조 및 부칙(2000.2.16 법률6265호) 제5조에 따라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임.

- 언론기관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는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담·토론회는 개최할 수 없는지?

⇒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언론기관의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5.20~6.1)중에만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을 것임.

- 후보자의 방송연설이나 언론기관이 개최하는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종합유선방송이나 중계유선방송 등이 중계방송할 수 있는지?

⇒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함)·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후보자의 방송연설 및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을 것임.

- 방송법상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아닌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임)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정책·정견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아닌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른 언론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것임.

후보자 추천 및 등록

□ 정당의 후보자추천(§47)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 제외,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함(§47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횟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함(§47③).

□ 무소속후보자 추천(§48)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2010.5.8부터 후보자등록마감전까지 관할 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함.

선 거 명	법정추천인수	비 고
시·도지사	1000인 ~ 2000인	당해 시·도안의 1/3이상의 자치구·시·군에서 나누어 받되 하나의 자치구·시·군마다 50인이상
교육감	1000인 ~ 2000인	
구·시·군의 장	300인 ~ 500인	
지역구시·도의원	100인 ~ 200인	
교육의원	100인 ~ 200인	
지역구구·시·군의원	50인 ~ 100인	인구 1천인미만의 선거구 : 30인~50인

□ 후보자등록(§49)

- 등록기간 : 2010. 5. 13 ~ 5. 14
- 접수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기탁금납부 : 시·도지사(5,000만원), 교육감(5,000만원), 구·시·군의 장(1,000만원), 시·도의원(300만원), 교육의원(300만원), 구·시·군의원(200만원)
- ※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

자주묻는질문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바, ○○시와 △△군이 하나

의 국회의원선거구인 경우 “△△군”에 여성후보자를 추천한다면
○○시에는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 귀문의 경우 △△군에 여성후보자 추천여부와 관계없이 ○○
시에 여성후보자 1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함.

○ ○○갑 국회의원선거구의 지역구광역의원정수는 3인이고 지역구
기초의원정수는 9명인 경우 △△당이 광역의원·기초의원선거에 남
성 후보자만 5명을 추천하고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등록무효가 되는지?

⇒ 귀문의 경우 정당이 ○○갑 국회의원선거구에서 지역구광역의원
정수 3과 지역구기초의원 정수 9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6)에 미달하는 5명만을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경우 전원을 남성으로 추천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52조제2항단서에 따라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광역의원
후보자 및 지역구기초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되지 아니
할 것임.

○ 「공직선거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하여 그 국회의원
지역구의 지역구지방의원후보자의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경우
각 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이 반환되는지?

⇒ 「공직선거법」 제57조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함.

○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명
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는 바, 1명만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남녀 구분 없이 추천할 수 있는지?

⇒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1인만 추천하는 경우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할 것임.

-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1순위·2순위 모두 여성을 추천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및 교육감·교육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 등이 같은 방법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 등이 추천을 받기 위하여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및 교육감·교육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호별방문하는 경우 입후보예정자의 경력·공적을 소개하거나 출마이유를 알리거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추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자신의 경력·공적이나 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목적을 벗어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등 지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0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정당의 선거관여행위가 금지된 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의 당원인 선거권자가 후보자추천을 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 무소속후보자 추천장에 날인하여야 하는 도장은 반드시 인감 등 증명된 인장이어야 하는지?

⇒ 귀문의 경우 선거권자가 「공직선거법」 제48조에 따라 후보자 추천장에 날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인장은 선거권자 자신의 것이라면 인감 등 증명된 인장이 아니더라도 무방할 것임.

○ A후보자 추천장에 날인한 선거권자가 B후보자 추천장에도 날인하여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단체 등의 선거쟁점관련 활동방법 안내

□ 선거쟁점과 관련된 활동의 방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 선거쟁점이란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정당·후보자간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사회적 현안을 말합니다.
- 현재,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나 무상급식의 실시 여부 등은 현재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쟁점화된 사안에 대한 찬성·반대의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논란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단체 및 정부의 활동이 계속 되어 왔더라도, 선거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정부·정당·단체 등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선거의 공정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찬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방법’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선거쟁점 사안의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은 정부 본연의 직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과 관련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 대한 설명회의 제한적 개최, 국가·지자체의 청사나 민원실 등에 홍보물 비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 보도

자료 제공 등은 가능합니다.

- 그러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광고하거나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자제되어야 합니다.

□ 정당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서 찬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당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됩니다 (정당법 §37②). 이러한 통상적 정당활동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90, §93).
- 따라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이 현수막 등의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통해 정치적 현안에 대해 입장을 알리는 것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서 가능합니다.
- 선거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의 방법에 따라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릴 수 있지만, 현수막이나 인쇄물을 거리에 게시·배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단체는 홈페이지·언론 등을 통해 찬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단체 고유의 활동과 아울러 단체의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라도 사전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단체의 활동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므로, 선거쟁점으로 부각되거나 선거공약으로 채택된 쟁점현안에 대해 찬성·반대하기로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소속 구성원에게 기관지·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해오던 방법으로 알리거나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 또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언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알릴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선거에 임박한 시기나 선거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쟁점에 대한 찬반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 등 설치·게시·배부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쟁점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배지 등의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90조에 위반됩니다.

▶ 인쇄물 배부 및 언론 광고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쟁점에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게시하거나 신문·방송·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93조에 위반됩니다.

▶ 서명활동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가두에서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것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서명운동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107조에 위반됩니다. 그러나 단체설립목적과 관련된 선거쟁점에 대해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무방합니다.

▶ 집회개최 등

선거기간 전에 선거쟁점관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에 해당하므로 사전선거운동이 될 것입니다(§254). 또한 선거기간 중에 이와 관련한 집회 개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103조에 위반됩니다.

[붙임1]

정부·정당·단체의 선거쟁점관련 활동 안내

I. 정부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관련법규정

- 정부조직법 제37조·제24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등에 관한 사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 공직선거법 제9조·제86조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정부의 정책홍보활동 운용선례

- 정부가 관련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개최하거나, 이를 설명하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청사나 민원실에 비치·게시하거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보도자료제공, 기자회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은 정부의 본연의 직무라 할 것임.
- 그러나 다수의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선거의 주요쟁점으로 삼고 있는 정책에 대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책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일반국

민을 대상으로 TV 또는 라디오 광고,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홍보물 배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각종 행사개최 등의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자제되어야 할 것임(2010. 4. 12. 회답).

-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간에 논쟁이 되고 있던 국부유출논란과 관련하여 정부가 중앙일간지 등에 해명성 광고를 게재한 사안에 대해 특정 정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다른 정당을 지원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선거시비를 불리일으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정부의 선거관여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광고게재를 자제하도록 협조요청(2000. 3. 23.)

II.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

관련법규정

-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정당이 특정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함.”
- 공직선거법 제90조·제93조에 따르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의해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의 경우 공선법 제90조·제93조에 의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 관련선례

- 정당이 정당집회가 허용되는 시기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집회를 개최하거나,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그

명의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인쇄물을 거리에 게시·배부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여 무방함.

- 그러나 정당이 정당집회가 허용되는 시기라 하더라도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집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개최하거나, 선거기간 중에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인쇄물을 거리에 게시·배부하는 행위는 공선법 제254조·제90조·제93조 등에 위반됨.

III. 단체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공선법규정

- 제90조·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쇄물 등을 배부 등을 할 수 없음.”
- 제10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
- 제10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음.”
- 제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전에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단체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운용기준

○ 시설물 등 설치·게시·배부

선거쟁점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 등을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설치·게시·배부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됨.

○ 인쇄물 배부 및 언론 광고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쟁점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게시하거나 신문·방송·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됨.

○ 서명활동

선거쟁점에 대해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것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서명운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107조에 위반되나, 단체의 설립목적과 관련있는 선거쟁점에 대해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무방함.

○ 집회개최 등

- 선거기간전에 선거쟁점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 선거기간 중 선거쟁점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위반될 것임.

정부·정당·각종 단체의 선거쟁점 관련 사례 예시

1. 정 부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국정설명회 개최 ◦ 정부가 국가 정책(4대강 살리기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인쇄물·시설물 등 ◦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청사나 민원실에 비치·게시하거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설명 자료 게시,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제공, 기자회견 등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는 행위 ◦ 지방행정연수원이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4대강 살리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행위	국정설명회 개최 ◦ 정부가 다수의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책 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인쇄물·시설물 등 ◦ 정부가 다수의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광범위하게 인쇄물·시설물, 광고물, 집회 등을 이용하여 홍보 활동을 하는 행위

2. 정 당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사설물 등 설치 ◦ 정당이 <u>선거기간전</u>에 그 명의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인쇄물·광고 ◦ 정당이 <u>선거기간전</u>에 그 명의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내용의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 정당이 <u>선거기간전</u>에 그 명의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시내버스, 지하철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 신문과 정기간행물이하 “알고신문 등”이라 함에 의한 광고의 경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1개월 전일까지 알고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로 하여야 함 서 명 집 회 ◦ 정당의 집회가 허용되는 시기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기 타 ◦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차량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사설물 등 설치 ◦ 정당이 <u>선거기간중</u>에 그 명의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인쇄물·광고 ◦ 정당이 <u>선거기간중</u> 그 명의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내용의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 정당이 <u>선거기간중</u> 그 명의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시내버스, 지하철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서 명 ◦ 정당이 정당 또는 후보자간 선거쟁점으로 부각된 현안에 대하여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행위 집 회 ◦ 정당의 집회가 허용되는 시기라 하더라도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집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개최하는 행위 기 타 ◦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정치적 현안 없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확성장치 등 홍보시설물을 이용하여 정책홍보 연설 등을 하는 행위

3. 시민단체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시설물 등 설치 ◦ 단체의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선거쟁점에 대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없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하는 현수막을 단체의 내부시설에 게시하는 행위 인쇄물 인터넷, 광고 ◦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기로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소속 구성원에게 해당 단체의 기관지·내부분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으로 알리는 행위 ◦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기로 결정한 후 그 내용을 보도자료 제공, 기자회견,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일반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	시설물 등 설치 ◦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의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배지 등 표시물이나 광고물을 배부하여 옷에 착용하게 하거나 차량에 부착·운행하게 하는 행위 인쇄물 인터넷, 광고 ◦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거리에서 또는 호별로 방문하여 배부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서명 활동 ◦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단체의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행위 ◦ 단체의 활동과 관련 있는 선거쟁점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모으기 위하여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행위 집회개최·거리행진 ◦ 옥내 등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의 내부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속 구성원만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전까지 다수인이 왕래하지 아니하는 관련 현장에서 언론을 통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하여 성명서 낭독·퍼포먼스 등 소속 구성원만이 참석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서명 활동 ◦ 선거쟁점에 대하여 거리에서 또는 호별로 방문하여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행위 ◦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나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부가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 집회개최·거리행진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쟁점에 대한 단체의 찬성·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피켓이나 표지판을 들고 거리행진을 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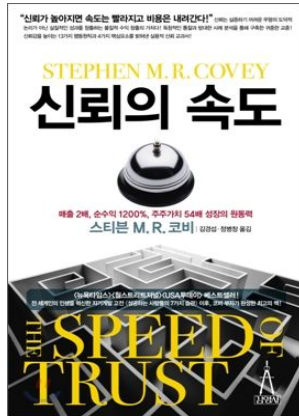
4. 종교단체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시 설 물 ◦ 종교단체의 공식적 입장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내용 없이 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두고 종교적 색채의 문구로 표현되는 등의 현수막을 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각 성당 내부에 게시하는 행위 인쇄물 등 배부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발간한(예시 “창조질서 거스르는 4대강 사업은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만화 등의 홍보책자를 신자들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행위 서명운동 ◦ 해당 종교단체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종전부터 해 오던 방법으로 서명활동을 전개하는 행위 미사·법회 예배 등 ◦ 종교단체의 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미사 등을 통하여 4대강 사업을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행위	시 설 물 ◦ 선거의 주요쟁점으로 부각된 4대강 사업 관련 현수막을 거리 등에 게시하여 일반 유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인쇄물 등 배부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발간한(예시 “창조질서 거스르는 4대강 사업은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만화 등의 홍보책자를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행위 서명운동 ◦ 4대강 사업이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시점에서 신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4대강 사업 찬성·반대와 관련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미사·법회 예배 등 ◦ 미사 등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호소·유도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참고 3>

행복한 책 읽기



도서명 : 신뢰의 속도

저자명 : 스티븐 M. R. 코비

출판사 : 김영사

출판년 : 2009년

페이지 : 524

가 격 : 22,000원

매출 2배 성장, 수익 1,200% 향상, 주주가치 240만 달러에서 1억 6,000만 달러로 54배 증가, 전 세계 40개 나라 진출. CEO 부임 3년 만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주인공은 누구일까? 세계 4대 경영 석학, 글로벌 빌리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전 세계인의 인생을 바꾼 자기계발 대가인 스티븐 R. 코비가 설립한 코비리더십센터의 CEO로 발탁되어 초고속 성장의 꿈을 현실로 바꾼 그는, 바로 코비링크월드와이드의 공동창립자 스티븐 M. R. 코비이다. 그가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결정적 원동력은 무엇일까?

해답은 ‘신뢰’에 있었다. 코비는 특유의 성품과 역량으로 사람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고 다른 사람을 신뢰함으로써, 누구도 달성하지 못했던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자신의 회사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경험을 기초로 포춘 500대 기업을 컨설팅하며 얻은 방대한 사례를 덧붙여 깊이 있고, 실제적이고, 포괄적인 ‘신뢰의 모형, 신뢰의 공식’을 최초로 밝혀내기도 했다.

그의 신뢰 공식의 핵심은 개인과 조직, 시장과 사회 전반에 있어서 신뢰 수준이 내려가면 속도도 함께 내려가고 비용은 올라가는 반면,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속도도 올라가고 비용을 내려간다는 것. 최근 집필한 『신뢰의 속도』에서 그는 신뢰가 경제적인 성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즉 신뢰가 대다수가 생각하듯 실증이 불가능하고, 관념적이고, 윤리적 지침일 뿐이라는 명제를 뒤집는 것이다. 오히려 신뢰란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형성할 수 있고, 즉시 실행 가능하며, 바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형 자산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하고 독창적인 사례를 통해 접근해 읽는 재미와 더불어 지적인 호기심과 충족감도 선사한다.

『신뢰의 속도』는 전 세계 CEO들 사이에서 ‘경영에 있어서 신뢰의 중요성을 수치화하여 밝혀낸 수작’이라는 호응을 얻으며 폭발적인 입소문의 효과로 「뉴욕타임스」와 「아마존」에서 장기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있다. 이 책이 특히 ‘실행’과 ‘가시적 성과’를 중시하는 까다로운 리더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바로 개인과 조직, 시장과 사회 차원에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것이 배울 수 있고 측정할 수 있으며 조직의 수익을 높이고 사람들이 빨리 승진하게 해주며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술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신뢰가 왜 새로운 글로벌 경제의 핵심 리더십 역량이 되었는지 분명하게 설명한다. 나아가 그는 독자에게 개인적, 업무적 관계에서 영원한 신뢰를 고취하는 방법과 그런 행동을 통해 삶의 모든 차원에서 유례없는 성공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룩하는 방법을 생생하게 증명한다.

특히 이 책은 신뢰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신뢰의 정도와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신뢰가 어떻게 조직의 성과와 매출을 높이
는지, 승진의 결정적인 요소로 신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직장상
사나 부하, 동료, 부부와 부모 사이에 신뢰감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에 대해 개인, 조직, 대인관계, 썸장, 사회 등 5가지 차원에서 구체적
인 전략을 제시한다. 그리고 신뢰성의 4가지 핵심요소와 신뢰감이 높
은 리더의 13가지 행동 특징 등을 세밀하게 담았다.

「신뢰성의 4가지 핵심요소」

핵심 요소 1 - 성실성: 말과 행동, 가치관이 일치하는가

‘사람을 고용할 때 성실성과 지능, 열정을 보는데 성실성이 없다면 나
머지 2가지는 필요 없다’고 말한 워런 버핏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신
뢰의 기본은 성실함에 있다. 성실성은 진실을 전달하는 정직성, 의도와
행동 사이에 간극이 없는 일치성, 자신보다 원칙을 우선시하는 겸손함,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포함한다.

핵심 요소 2 - 의도: 당신이 하고자 하는 생각은 무엇인가

칸트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죄이며,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도의적인 유죄다’라고 말했다. 의도
란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정한 관심에 따른 동
기, 동기에서 파생된 의제, 그리고 두 요소의 결합으로 나온 결과물인
행동을 의미한다.

핵심 요소 3 - 능력: 꼭 필요한 사람인가

능력은 신뢰의 요소 중 누구나 당연하게 꼽는 것 중 하나다. 능력에
는 재능과 지식, 기술과 더불어 ‘태도’와 ‘스타일’, 즉 일하는 방식이 포
함된다.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치열한 태도
또한 ‘능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새로운 명제다.

핵심 요소 4 - 성과: 어떤 실적을 올렸는가

코비는 ‘성과’를 ‘신뢰를 높이는 데 최고의 무기’라고 표현한다. 그는 기업이 3가지 지표, 즉 과거의 실적, 현재의 실적, 미래에 기대되는 성과로 나누어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과를 생각할 때 반드시 어떠한 성과를 얻고 있는 것을 자문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파헤쳐야 한다고 말한다

[자료출처 : 인터넷서점]